

○ ○ 지 방 중 대 범 죄 수 사 청

제 호 . . .

수 신: 허가 법원

제 목: 폐기결과보고

다음 피의자에 대한 (죄명)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.

피의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직업			
	주거			
통신제한조치 집행 사건	사건번호			
	허가서번호			
	집행종료일			
	전기통신보관등 승인서번호			
	전기통신보관등 승인(기각)통지일			
폐기의이유				
폐기의범위				
폐기일시				
전기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경과 및 요지				
전기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주체 및 방법				
폐전기통신의 기록		(별지와 같음)		
비고				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

수사관